



제 1070 호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2- 1562호	소액수의[수목구입(회양목외5종)]견적제출 안내 공고	2
○ 공고 제2012- 1568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	5
○ 공고 제2012- 1569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4공구)」	13
○ 공고 제2012- 1570호	공인등록 공고	16
○ 공고 제2012- 1575호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17
○ 공고 제2012- 15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8
○ 공고 제2012- 158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결정(폐지,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25
○ 공고 제2012- 15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27
○ 남동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12-29호	남동문화예술회관 청년공연도우미 공개모집 공고	41
고 시		
○ 고시 제2012- 110호	도로명주소 고시	45
○ 고시 제2012- 11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3동 111-186일원 공영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고시	50
○ 고시 제2012- 11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54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6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수목구입
 - 나. 구입물품 : 회양목외 5종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다. 설계금액 : 12,183,000원
 -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납품)
 -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남동구 관내 10개 공원녹지)
 - 사. 납품조건 : 붙임 납품시방서 참조
 - 아.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2. 10. 16(화) 10:00 ~ 2012. 10. 18(목) 10:00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 10. 18(목)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도시공원과 임형섭 (☎032-453-2855)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조경수(묘목)생산 또는 판매를 등록한 자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로서 우리구 물품내역 및 납품시방서에 의거 납품 가능한 자이며
- 나.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본 공고일로부터 1년간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입찰건에 대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3. 입찰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90%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1호, 2010.10.26)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가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과 (032-453-2855 임형섭)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재무과 (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68호

도시철도사업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사업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
3. 사업의 위치 : 인천 서구 ~ 인천 남동구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2. 10. 18~ 2012. 11. 01.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3)
6. 수용재결신청물건 : 별첨 사업자제시액조서 참조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시 행 자 제 시 액 조 서 (토지-영구취득)

○ 공사명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

* 금액 등은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전)	편입지번 (분할후)	지목	실제 이용	편입면적 (㎡)	지분	㎡ 당 단가(원)		평가금액(원)		소유자	관계자		비고
	구	동							나라	에이원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성명	성명	
1	남동구	구월동	341-5	341-19	대	대	33	1	3,646,000	3,646,000	120,318,000	120,318,000	이명*	남동농업 협동조합 (석암지점)	근저당권	
	(1필지)						33			120,318,000	120,318,000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토지-일시사용)

○ 공사명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 공구)

* 금액 등은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전)	관입지번	지목	상태	공부상 면적(㎡)	관입면적 (㎡)	지분	㎡ 당 단가(원)		㎡당 평균 단가(원)	평가금액(원)		소유자	관계자		비 고	
	구	동								나라	에이원		단가(원)	(주)나라감정 평가법인		(주)에이원감정 평가법인	성명	성 명	권리의 내용
1	남동구	구월동	341-5	341-5	대	대	358	48	1/1	914,540	914,540	914,540	43,897,920	43,897,920	이명*	남동농업 협동조합 (석암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3개월	
2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5.68/ 3502.2				364,470	364,470	한국토지**	김상권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1호)
																전운선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1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1호)
3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2.84/ 3502.2				324160	32416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2호)
4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3.53/ 3502.2				333960	33396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3호)
5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8.7875/ 3502.2				293310	293310	박정*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4호)
6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6.2625/ 3502.2				97770	97770	구남*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4호)
7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5.18/ 3502.2				215450	215450	한국토지**	(주)삼산상호저축 은행(인천지점)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8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8호)
8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4.35/ 3502.2				203670	203670	육철*	중소기업은행 (인천공판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9호)

9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5.18/ 3502.2		215450	215450	한국토지*	이태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14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14호)
10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4.35/ 3502.2		203670	203670	임동*	남동구청장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15호)
11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5.18/ 3502.2		215450	21545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18호)
12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4.35/ 3502.2		203670	203670	한국토지*	이태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19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19호)
13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8.42/ 3502.2		261430	261430	한국토지*	이태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0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0호)
14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0.89/ 3502.2		177890	17789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1호)
15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3.02/ 3502.2		110870	11087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2호)
16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3.02/ 3502.2		110870	11087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3호)
17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3.02/ 3502.2		110870	11087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4호)
18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3.02/ 3502.2		110870	11087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5호)
19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3.02/ 3502.2		110870	11087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6호)
20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3.02/ 3502.2		110870	11087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7호)
21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2.31/ 3502.2		104830	10483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8호)
22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7.14/ 3502.2		145960	145960	한국토지*	김형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9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29호)	
23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2.54/ 3502.2		106790	106790	박세*	우리은행 (시흥동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32호)
24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2.77/ 3502.2		108750	10875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33호)
25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55.73/ 3502.2		383580	38358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02호)
26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34.14/ 3502.2		234980	234980	최재*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03호)
													박선순	전세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03호)	
27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4.59/ 3502.2		100420	10042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07호)
28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2.49/ 3502.2		85970	85970	한국토지*	한국씨티은행 (용현동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09호)
29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2.49/ 3502.2		85970	85970	강정*	한국씨티은행 (용현동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10호)
30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4.59/ 3502.2		100420	100420	문미*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11호)
31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4.59/ 3502.2		100420	100420	한국토지*	이태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18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18호)	
32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47.33/ 3502.2		325760	325760	한국토지*	이태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19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19호)	
33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5.57/ 3502.2		149590	14959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20호)
34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0.47/ 3502.2		61250	6125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21호)
35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0.56/ 3502.2		61780	61780	이순*	한국씨티은행 (관교동지점)	근저당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22호)

36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2.12/ 3502.2		70910	70910	이순*	한국씨티은행 (관교동지점)	근저당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23호)
37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2.12/ 3502.2		70910	7091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24호)
38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0.85/ 3502.2		121980	12198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25호)
39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1.06/ 3502.2		64710	64710	유영*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26호)
40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47.73/ 3502.2		253990	253990	한국*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1호)
41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44.04/ 3502.2		234360	234360	한국*	이태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3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3호)
42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49.03/ 3502.2		273950	273950	한국*	이태진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4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4호)
43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9.25/ 3502.2		155650	155650	전경*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8호)
44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9.25/ 3502.2		155650	155650	손원*	중소기업은행 (대림동지점)	근저당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9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09호)
45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40.51/ 3502.2		183230	183240	한국*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13호)
46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30.38/ 3502.2		137410	137410	한국*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14호)
47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1.09/ 3502.2		50160	50160	손원*	중소기업은행 (대림동지점)	근저당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3층 315호)
48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52.47/ 3502.2		253020	253020	한국*	성신공영(주)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1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1호)

													장에스더		상가물 임차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1호)
49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30.28 /3502.2		146020	146020	양선*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3호)
50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58.76/ 3502.2		297520	297520	박경*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4호)
51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9.653333/ 3502.2		46550	46550	오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5호)
52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9.653333/ 3502.2		46550	46550	오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6호)
53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8.266667/ 3502.2		39860	39870	오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7호)
54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8.96/ 3502.2		139650	139650	김인*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9호)
													국민건강보험공 단(주안구청지점)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9호)
55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46.98/ 3502.2		226550	226550	이동*	한국씨티은행 (부천서지점)	근저당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12호)
56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5.38/ 3502.2		104030	104030	한국*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13호)
57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0.79 / 3502.2		85220	85220	한국*	성신공영(주)	가처분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14호)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14호)
58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11.26 / 3502.2		46150	4615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16호)
59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52.2 / 3502.2		238570	23829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5층 501호)
60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45.33 / 3502.2		207170	20693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5층 502호)
61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8.79		131580	13142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대지권 설정

								/								41개월	(5층 510호)
								3502.2									
62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20.67 / 3502.2		80300	80200	한국토지*	남동구청장	압류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5층 515호)
63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5.81 / 3502.2		22570	22540	남의*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5층 516호)
64	남동구	구월동	1264	1264	대	대	[1267.8]	[24.0]	5.81 / 3502.2		22570	22540	정영*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5층 516호)
65	남동구	구월동	1264-73	1264-73	대	대	647.8	[5.0]	6.78 / 647.8		91370	91370	노혜*	하나은행 (학익동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1호)
66	남동구	구월동	1264-73	1264-73	대	대	[647.8]	[5.0]	13.1 / 647.8		176550	176550	김영*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3호)
67	남동구	구월동	1264-73	1264-73	대	대	[647.8]	[5.0]	13.1 / 647.8		176550	176550	김영*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1층 104호)
68	남동구	구월동	1264-73	1264-73	대	대	[647.8]	[5.0]	89.87 / 647.8		665400	665400	배정*			사용개시일로부터 41개월	대지권 설정 (2층 201호)
	(3필지)							77			54846620	548458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69호

도시철도사업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4공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사업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4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4공구)
3. 사업의 위치 : 인천 서구 ~ 인천 남동구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2. 10. 18~ 2012. 11. 01.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3)
6. 수용재결신청물건 : 별첨 사업자제시액조서 참조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시 행 자 제 시 액 조 서 (토지-영구취득)

○ 공사명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4[지상] 공구)

* 금액 등은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

연번	조서번호	소 재 지		당초지번 (분할전)	편입지번 (분할후)	지목	실제 이용	공부상 면적(m ²)	편입면적 (m ²)	지분	m ² 당 단가(원)		소유자 성명	관계자		비 고
		구	동								나라	에이원		성 명	권리의 내용	
1	4	남동구	만수동	884-8	884-16	대	대	11.9	11.9	1/1	3441000	3374000	김창*	부평농업 협동조합 (효성지점)	근저당권	
	계	(4필지)							11.9							

사 업 시 행 자 제 시 액 조 서 (토지-일시사용)

○ 공사명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4[지상] 공구)

* 금액 등은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

연번	조서 번호	소 재 지		당초지번 (분할전)	편입지번 (분할후)	지목	실제 이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지분	㎡ 당 단가(원)		소유자	관계자		비 고	
		구	동								나라	에이원		성 명	권리의 내용	(일시사용기간)	(대지권 관련)
1	9	남동구	만수동	884-7	884-7	대	대	537.6	22	1/1	742680	728220	박효*			사용개시일로부터 37개월	
2	10	남동구	만수동	884-8	884-8	대	대	897.6	31	1/1	802900	787270	김창*	부평농업 협동조합 (효성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0개월	
3	13	남동구	만수동	948	948	대	대	638.1	47	1/1	891920	909110	(주)백*			사용개시일로부터 44개월	
4	16	남동구	만수동	956	956	대	대	[912.0]	[28.0]	59.4/ 916.4			정용*	남동농업 협동조합 (북부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3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1호)
5	16	남동구	만수동	956	956	대	대	[912.0]	[28.0]	59.91/ 916.4			우양*			사용개시일로부터 43개월	대지권 설정 (4층 403호)
6	16	남동구	만수동	956	956	대	대	[912.0]	[28.0]	89.36/ 916.4			이미*	우리은행 (중곡서지점)	근저당권	사용개시일로부터 43개월	대지권 설정 (5층 502호)
	계	(4필지)							128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70호

공인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인 등록 사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의거
-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2. 10. 19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신조(1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민원봉사과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75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우)405-70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6동 1008) / ☎(032)453-2264 / fax(032)453-2269

재무과 과장 정창열 / 경리담당 남기동 / 담당자 이영미

문서번호 : 재무과 -

발 신 일 : 2012. 10. 18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부 정 당 업 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주)세종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121-81-41097 124611-0237394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6-1 경향프라자 702호		
	대 표 자	박종선	주 민 등 록 번 호	581205-1*****
	주 소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일반측량업	면허·등록번호등	E-9-1051 E-9-1051 제02-2947호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1항 6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 재 년 월 일	2012. 09. 12	만료년 월 일	2013. 03. 11
	제 재 기 간	2012. 09. 12 ~ 2013. 03. 11 (6개월)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 [고잔동 296-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수신처 세종건설엔지니어링(주) 대표 박종선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남동구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지역사회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관련 법규 준용 조문 신설(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453-2212, FAX 453-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지원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요건과 자격을 갖춘 제2조 제3호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5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u>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u>제15조 (생략)</u> <u><신 설></u>	<u>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u> <u>제16조(자원봉사자)</u>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지원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16조(업무의 위탁)</u>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u>제17조(업무의 위탁)</u> ① ----- ----- 전부 또는 일부를 요건과 자격을 갖춘 제2조 제3호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7조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 서 별 의 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8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도로) 결정(폐지, 변경)을 위한 입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도로) 결정(폐지,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 10.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요내용

- ☐ 시 설 명 : 시장(석천자유시장)
- ☐ 위 치 : 남동구 간석동 313-1번지 일원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 가.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 1) 시장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시 장	-	남동구 간석동 313-1번지 일원	3,150.1	감) 3,150.1	-	경고 제79-350호 (79.09.13)	

2) 시장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장	·시장 폐지 ·면적 : 3,150.1㎡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장기능 상실과 주변 지역의 슬럼화 우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나. 교통시설(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8~13	국지도로	195	중3-47	소2-9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3	9~13	국지도로	195	중3-47	소2-92	일반 도로	-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소로 1-13	소로 1-13	·폭원확대 (B=8m→9m)	·시장 폐지된 부지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의 유발 교통량을 고려하여 폭원확대

2.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453-295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5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10.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2.6.29.)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
- 보육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있는 보조금 지급기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 (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제3조제1호 및 제6호)
-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의2)
- 다.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부분 삭제(안 제15조제7항)
- 라. 보조금 지급기준과 반환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장)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24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42, FAX 453-58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2.6.29)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 보육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수있는 보조금 지급기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 (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제3조제1호 및 제6호)
 - 위원회의 구성 중 지방의회의원 부분 삭제
 - 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의2)
-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부분 삭제(안 제15조제7항)
- 보조금 지급기준과 반환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장)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24조
- 보건복지부 보육지침개정문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보육”을 “보육정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조제4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을 “관계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등 실적이 부족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장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을 “규정에 따라”로 하고,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인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규정에 의거”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을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을 “남동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항 중 “구립”을 “국공립”으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비품·장비 및 교재·교구비
2.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제1조, 제13조(제1호 및 제5호), 제16조(제1항부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호부터 제5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각각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목 및 본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각각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한다.

제13조제6호 및 제14조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u>규정에 의</u> <u>한</u>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과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u>규정에</u> <u>의하여</u>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 다)가 설치한 <u>보육시설</u> 및 남동구청 직장 <u>보육시설</u>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 요한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2. <u>보육시설의 장</u> 또는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구 본청 공무원 5. <u>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u> <u><신 설></u>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을 두며, 간사는 <u>노인장애인과장</u>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규정에 따</u> <u>른</u> ----- ----- -----<u>제14조의 규정에</u> <u>따라</u>----- -----<u>어린이집</u>----- <u>어린이집</u>----- ----- -----<u>정함</u>-----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현행과 동일)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어린이집의 원장</u> 또는 보육교사 대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공익을 대표하는 자</u> 6. <u>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u> <u>영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u>보육업무 담당부서장</u>-----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u> 2. 법 제11조의 <u>규정에 의한</u>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u>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u>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u>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의 <u>규정에 의한</u>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u>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u>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u>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u>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u><신 설></u>	제3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u><삭 제></u> 2.-----<u>규정에 따른</u>----- ----- -----<u>규정에 따른</u>----- ----- 3. <u>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u>----- <u>규정에 따른</u>----- 4. <u>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u>-<u>규정에 따른</u>----- 5.-----<u>규정에 따른</u>----- ----- <u><삭 제></u> 7.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 ----- -----<u>남은 기간</u>----- ②-----<u>관계공무원인 위원</u>-----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현 행	개 정 안
제3장 <u>보육시설</u>의 설치 및 운영 제9조(<u>구립보육시설의 명칭</u>) <u>구립보육시설</u>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u>위탁계약 등</u>)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u>규정에 의하여</u>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u>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u> 또는 개인에게 <u>구립보육시설</u>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u>구립보육시설</u>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u>규정에 의한</u>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u>규정에 의거</u> <u>구립보육시설</u>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11조(<u>위탁운영자 모집</u>)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u>구립보육시설</u>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u>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u> 3. <u>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등 실적이 부족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u> 제3장 <u>국공립어린이집</u>의 설치 및 운영 제9조(<u>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u>) <u>국공립어린이집</u>----- 제10조(<u>위탁계약 등</u>)----- -----<u>규정에 따라</u>----- -----<u>법인·단체</u>----- -----<u>국공립어린이집</u>----- ----- ② <u>국공립어린이집</u>----- -----<u>규정에 따른</u>----- ----- ----- ----- ----- ----- ③-----<u>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u>----- ----- ----- ----- ----- ----- ----- 제11조(<u>위탁운영자 모집</u>) ①----- -----<u>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u>----- ----- -----

현행	개정안
제12조(위탁기간) ① <u>구립보육시설</u>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류) <u>구립보육시설</u> 위탁운영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보육시설</u> 위탁운영 신청서 2. 위탁신청업체 현황 3. 법인의 정관 (법인의 경우) 4.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5. <u>보육시설</u> 운영 계획서 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14조(종사자 임면) ① <u>구립보육시설</u>의 <u>시설장</u>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종사자는 <u>시설장</u>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u>구립보육시설</u>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 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2조(위탁기간) ① <u>국공립어린이집</u>----- ----- ----- 제13조(신청서류) <u>국공립어린이집</u>----- ----- ----- 1. <u>어린이집</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어린이집</u>----- 6. (현행과 같음) 제14조(종사자 임면) ① <u>국공립어린이집</u>--- <u>원장</u>----- -----<u>원장</u> -----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u>국공립어린이집</u>-----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청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 보육시설 입소아동 보육료 3. 기타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제17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자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어린이집----- ----- ----- ----- ②-----어린이집----- ----- ③-----남동구청 직장어린이집----- ----- -----범위에서----- ----- 1. 어린이집----- 2. 어린이집----- 3. -----국공립----- ----- 제1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규정에 따른----- ----- ----- ----- ----- 제5장 보칙(종전의 제4장) 제21조(종전의 19조)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19조(비용의 보조) ①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현행	개정안
	<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 <u>1. 비품·장비 및 교재·교구비</u> <u>2.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u> <u>3.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u>②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u> <u>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u> <u>2.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u> <u>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20조(보조금의 반환명령)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u> <u>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u> <u>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u> <u>3.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u> <u>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u>

실·단·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12-29호

남동문화예술회관 청년공연도우미 공개모집

공연도우미 결원 충원과 앞서가는 공연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동문화예술회관 청년공연도우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 10. .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문화예술회관장

1. 모집인원 : 00명 (남,여)

2. 지원자격

○ 만28세 이하[1984. 1. 1 이후 출생자]의 남·여(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 활동은 만29세까지 가능

○ 공연스케줄에 따라 1년이상 근무 가능한 자

○ 공연예술을 좋아하며, 책임감과 성실함이 남다른 자

1) 공연예술 관련 학과 및 공연장 근무 경험이 2개월 이상 있는 자 우대

2)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발

3. 근무조건

○ 근무방법 : 매달 공연 일정에 따라 스케줄 근무

- 근무시간 : 공연시작 1시간전 ~ 공연종료시까지

○ 주요업무 : 관객안내, 입장권 수표 등

○ 단 가

- 공 연 : 1회 24천원, 2회 36천원, 3회 48천원

※ 식비 제공 : 7천원 (2회공연 및 5시간 이상 근무시)

- 전 시 : 시간당 6천원 (준비시간 및 식사시간 제외)

※ 식비 제공 : 7천원 (5시간이상 근무시)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에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에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재학, 휴학, 대학(원)졸업증명서 1통(사본 가능)
- 사진 1매(반명함판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 응시원서에 부착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사본 가능, 해당자만 제출)

5.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10. 15(월) ~ 11. 2(금)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교 부 : 남동문화예술회관 인터넷 홈페이지 소정 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
(<http://www.namdongarts.kr> : 상단의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접 수 : 소정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 방 문 : 평일 9시~18시 남동문화예술회관 경영지원팀
 -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437번길 32 남동문화예술회관 경영 지원
팀 (우:405-300) 11. 2(금) 18시한 도착
 - ☑ 팩 스 : 032-453-5189 11. 2(금) 18시한
 - ☑ 전자우편 : nanamie@korea.kr(구비서류 스캔하여 제출) 11. 2(금) 24시한

6. 합격자 선정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내용, 기재의 충실성 등)

7. 세부전형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2. 10. 15(월) ~ 11. 2(금) [18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합격자 발표 : 2012. 11. 6(화)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자격을 박탈함
- 본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함
- 남동문화예술회관은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함(인천논현역에서 차로 5분거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문화예술회관 경영지원팀(☎032-453-5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응시원서]

남동문화예술회관 공연 도우미 청년분야 응시원서

지원분야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취업준비생()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사진 3.5×4.5 (반명함판)
			한자		
		생년월일			
병역 사항	※ 해당자만 기재하세요				
주소				전 화 :	
				휴대전화 :	
				E-mail :	
학력	고등학교	년 월 (졸업, 중퇴)			
	대 학 교	년 월 (재학, 졸업, 휴학) (학년 : 학년, 전공 :)			
	대 학 원	년 월 (재학, 졸업, 휴학) (전공 :)			
해당 분야 경력	기간	근무처		직위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 구비서류 : 1)자기소개서 1부, 2)재학, 휴학, 졸업증명서 1부, 3)수급자증명서 1부					

응시표		성명(한글)	
		생년월일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붙임 2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1. 공연 도우미 지원동기 (5줄 이내) - (굴림 포인트15)

2. 자신의 최대 장점 및 성격 (5줄 이내) - (굴림 포인트15)

3. 합격 후 나의 포부 (5줄 이내) - (굴림 포인트15)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서명)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1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03-1외 6건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 6외 1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8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7건)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별 도 열 램(12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0.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예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03-1	20090706	예전 주안면과 다소면에는 돌과 우물이 많았다는 유래에서 제명	2012.10.19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 503-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03-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0번길	33	20091116	예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10.19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예술로140번길 3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3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도시 개발구역 오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42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10.19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 84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42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70번길	5-3	20091116	논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10.19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로170번길 5-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	6-8	20091116	소래역로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10.19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서로 6-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8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	7	20091116	소래역로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10.19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서로 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2-2 102-7, 1092-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86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구월로의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10.19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 8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6을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4-6, 654-5, 72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논현동 654-5는 "소래역서로 4"임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5-4, 7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	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1, 6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논현동 667-2는 "앵고개로941번길 11-23"임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0-8, 70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36번길	5-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7-1, 69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12번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29-10, 7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29-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26번길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22-5, 6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10번길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논현동 622-4는 "논현남로 14-10"임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5-15, 585-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5-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55번길	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논현동 585-14는 "은봉로255번길 5-20"임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3-23, 60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15번길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9-7, 619-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논현동 619-8은 "논현남로 11"임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79-2, 683-1, 68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79-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피로	43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5-1, 60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12번길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10.19	종전지번 직권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2	2012.10.1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1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3동 111-186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3동 111-186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10.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3동 111-18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만수3동 111-186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3. 사업의 규모 : 면적(A=250.0㎡), 주차대수 10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3. 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1	남동구 만수동	111-514	대	14	14	국(산림청)		
2	남동구 만수동	111-389	대	68	68	남동구청		
3	남동구 만수동	111-513	대	5	5	인천광역시		
4	남동구 만수동	111-186	대	93	93	남동구청		
5	남동구 만수동	111-187	대	14	14	인천광역시		
6	남동구 만수동	111-188	대	56	56	남동구청		
소계				250	250			

【 관련 기관(부서) 협의의견 】

연번	검토부서	검 토 의 견
1	인천광역시 재산관리과	○ 만수동 111-513, 만수동 111-187 편입대상 토지는 유상취득(손실보상 매각) 대상임
2	북부지방삼림청	○ 만수동 111-514 편입대상 토지는 유상취득(손실보상 매각) 대상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안내】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2.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각종 영향평가 이행」,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등 **관련기관(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4. 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는 도로사업 준공 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러개의 필지로 형성된 토지를 1개 필지로 합병 및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공사준공 시 공인기관의 측량결과에 의거 도시계획선 부합여부 확인 후 **측량성과도** 제출할 것.
5.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1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 월 19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장수동	인천020	NJ52-9-17-020	준보전산지
남동구	논현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장수동	안양011	NJ52-9-18-011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운연동	안양021	NJ52-9-18-021	준보전산지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운연동	안양021	NJ52-9-18-021	준보전산지
남동구	남촌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인천039	NJ52-9-17-039	
남동구	장수동	인천020	NJ52-9-17-020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39	NJ52-9-17-039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장수동	인천020	NJ52-9-17-020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남동구	수산동	인천030	NJ52-9-17-030	준보전산지
남동구	운연동	안양021	NJ52-9-18-021	준보전산지
남동구	도림동	인천040	NJ52-9-17-040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공원과(☎032-453-2870)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 m²)

일련 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 적			전용용도	도업명 및 도업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02-17 전	452.29	452.29	452.29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448-11 전	5,477.32	5,477.29	5,477.29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20^인천020
3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논현동	159-9 전	4,197.79	4,197.78	4,197.78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4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526-18 전	919.52	919.52	919.52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5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447-1 전	1,612.10	1,612.10	1,612.10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8-011^안양011
6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343-18 과	5,088.17	5,085.37	5,085.37	과수원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7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343-19 과	801.65	801.03	801.03	과수원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8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운연동	226-1 과	4,246.38	4,246.37	4,246.37	과수원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8-021^안양021
9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02-6 전	89.40	89.40	89.40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10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운연동	419-5 과	1,250.32	1,250.32	1,250.32	과수원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8-021^안양021
1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남촌동	157 전	2,540.09	2,540.09	2,540.09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NJ52-9-17-039^인천039
1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448-16 전	2,795.80	2,795.80	2,795.80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20^인천020

13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591-8 전	809.86	809.85	809.85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39^인천039
14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02 전	673.07	673.07	673.07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15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448-13 전	3,272.97	3,272.97	3,272.97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20^인천020
16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02-2 전	421.88	421.88	421.88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17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526-12 전	1,533.85	1,533.85	1,533.85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18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02-15 전	337.57	337.57	337.57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19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02-14 과	1,065.62	1,065.62	1,065.62	과수원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20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수산동		531 전	1,336.41	1,336.41	1,336.41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30^인천030
2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운연동		419-4 전	565.61	565.61	565.61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8-021^안양021
2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343-20 전	465.94	465.94	465.94	전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	NJ52-9-17-040^인천040
소계	7-1-3					39,953.61	39,950.13	39,950.13		
합 계						39,953.61	39,950.13	39,950.13		